

대법원 2021. 1. 14 선고 2020다27124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1. 1. 14 선고 2020다271247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20. 9. 16 선고 2019나10388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19. 10. 16 선고 2018가소53930 판결

전문

원고,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

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빈

피고,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

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덕

담당변호사 이원희,안세환,김조영,김재훈

판 결 선 고 2021. 1. 14

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0. 9. 16. 선고 2019나10388 판결

주문

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한다.

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,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각 부담한다,

이 유

1.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한 직권판단

피상고인이 상고권이 소멸된 뒤에 하는 부대상고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다52657판결 등 참조).

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상고인인 피고에게 송달된 2020. 10. 14.부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지난 2020. 11. 5.에야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, 원고의 부대상고는 부적법하다.

2.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그 법 제3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.

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앞서 든 규 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3. 결론

그러므로 원고의 부대상고를 각하하고,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, 상고비용은 피고 가, 부대상고비용은 원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박상옥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노정희